

부산지방법원 2024. 10. 8 선고 2024가단3516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0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32,489,480원과 2024. 5. 20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400,000원의 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김정우

별지